

2017 No.1 **e** 연구리뷰

E-2R/E-Research Review

약식표기 가설기자재 인증표기 기준 마련

02p 연구배경

연구기간 / 핵심단어 / 연구과제명 / 연구배경

03p 주요 연구내용

연구결과 / 시사점

04p 연구활용방안

제언 / 개선방안 또는 정책방안 / 활용



산업재해예방
안전보건공단
산업안전보건연구원



약식표기 가설기자재 인증표기 기준 마련

- 연구기간** 2016년 1월 ~ 2016년 11월
- 핵심단어** 건설업, 가설기자재, 안전인증, 자율안전확인인 신고, 인증표시
- 연구과제명** 건설업 가설기자재 인증표시기준 개선에 관한 연구

01 연구배경

- 고용노동부 고시 「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인 신고, 규정에서는 가설기자재의 표기형식을 모델명, 규격 또는 등급, 제조자명, 제조번호 및 제조연월, 안전인증(자율안전확인)번호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부분 인증마크와 영자 이니셜 또는 국명, 제조연도 등 간략화하여 표기하고 있는 실정이며,
- 이러한 표시방법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가설기자재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인 신고 표시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임

02 주요 연구 내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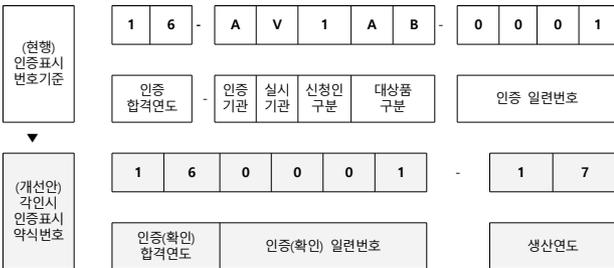
연구결과

- 인증표시 기준 개선 방향

안전인증 제종(안)	자율안전확인 제종(안)	(강제) 가설기자재 표면 직접 표기 기준 상세내용(안)	
		표기	
		○	인증마크 크기는 5 mm 이상
가. 형식 또는 모델명	가. 형식 또는 모델명	×	상세정보 별도 제공
나. 규격 또는 등급 등	나. 규격 또는 등급 등	×	상세정보 별도 제공
다. 제조자명	다. 제조자명	△	선택표기, 한글 또는 영문 약자 표기 가능
라. 제조번호	라. 제조번호	×	상세정보 별도 제공
마. 제조연월	마. 제조연월	○	생산연도만 약식 표기(2016 → 16)
바. 안전인증 번호	바. 자율안전확인 번호	○	약식 표기, [아래 그림] 참조

[비고] ① 강제로 제작하는 가설기자재의 인증표시는 각인 방식으로 하여야 함.
 ② 라벨 또는 스티커 방식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상기 표시사항을 모두 표기하여야 함.
 ③ 가설기자재와 연결되어 사용하는 부품의 경우 인증표시를 생략할 수 있음.

안전인증(자율안전확인인신고)번호 약식표기 방안



시사점

- 국내의 경우 가설기자재를 생산하는 제조회사별로 안전인증 표시 내용과 크기, 위치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관리상의 어려움이 많이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나,
- 외국의 경우 소비자가 인증표시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는 바가 크기에 인증표시에 관한 사항을 제조회사에 자율적으로 맡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

03 연구 활용 방안

제언

- 건설업 가설기자재 관리 제도의 효율성 제고, 수요자의 사용성 향상 및 건설업 가설기자재 제조·임대·사용 등 유통과정에서 가설기자재의 인증여부에 대한 식별이 용이하여 불법 가설기자재에 대한 유통·사용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

개선방안 또는 정책방안

- 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고시와 자율안전확인인고시 고시에 표시 항목을 '연도, 일련번호, 생산연도' 로 간략화하여 표시할 것을 제안하고 관련 고시 개정(안)을 마련하였음
- 가설기자재 부재 또는 부품별로 제조방식에 따라 음각 또는 양각을 적용하여 표시하는 방식이 가능하도록 관련 방안을 제안하였음

활용

-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자료로 활용
- 건설업 가설기자재와 관련한 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 고시 및 자율안전확인인고시 고시 개정에 필요한 근거 자료로 활용
- 안전인증(또는 자율안전확인인신고)의 원활한 정보공유 및 관리 효율화 등을 위하여 안전인증 신청 절차·내용의 개선 및 인증 관련 정보공유 시스템 개선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

연구담당자 연락처

-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안전연구실 유현동
- ☎ 052) 703. 0850
- E-mail yoohd@kosha.or.kr